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합52791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나20475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합527910 판결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주식회사 A

변론 종결 2016. 6. 1.

판결 선고 2016.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공동피고 B 주식회사(2015. 7. 8. 청구인낙하였다. 이하 'B'라고만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12. 17.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을 채권자로 하여 그 보증내용이 기재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공동피고 C(2015. 7. 8. 청구인낙하였다. 이하 'C'라고만 한다)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보증금액 : 3억 원

○ 피보증채무 : 피고 A과 B가 약정한 2014. 1. 8.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B가 피고 A에 부담하는 상거래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 보증기간 : 2014. 6. 30.부터 2015. 6. 29.까지

○ 사전구상 : B가 거래 은행의 당좌거래정지처분, 대출은행 등으로부터의 신용보증사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B와 연대보증인 C는 원고로부터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도 위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한다.

○ 상환범위 :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B)과 연대보증인(C)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수수료

나. B는 2015. 2. 9. 휴·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7.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피고 A에게 3억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B로부터 1,726,020원을 회수하였다.

라. 원고의 위와 같은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B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274,547원 및 그 중 298,273,980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마. B는 2014. 12. 17. 피고 A에게 B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받을 402,613,879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A은 D으로부터 위 양도받은 채권 중 2014. 12. 31. 4억 원, 2015. 1. 7. 269,408원 합계 400,269,40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채권자 중 하나인 피고 A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A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액인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받은 채권을 회수한 돈 400,269,408원 중 원고의 채권액 상당인 3억 원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14. 6. 30. B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를 채권자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 B와 피고 A은 2014. 12. 17.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B가 2015. 2. 9. 휴·폐업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4. 7.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피고 A에게 3억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와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2014. 6. 30.부터 물품거래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2014. 6. 30. 이전까지의 B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629,976,451원이었다가 2014. 7.말경 1,388,829,979원, 2014. 8.말경 1,302,834,326원, 2014. 9.말경 1,501,199,971원, 2014. 10.말경 1,546,618,423원, 2014. 11.말경 1,997,023,323원이 되었고, 2014. 12. 17. 직전에는 1,697,023,323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6. 30.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이후 B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계속 증가하여 2014. 11.말경에는 1,997,023,323원이 되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직전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직전에도 1,697,023,323원이 되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약 50여일 후인 2015. 2. 9. B가 휴·폐업을 하게 되어 원고가 2015. 4. 7. 피고 A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비록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성립되지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14. 12. 17. 당시 B의 재산상태가 아래의 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다 제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D과 주식회사 대영케이블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소극재산(3,229,200,975원)이 적극재산(2,686,292,164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주)중원금속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672,765,278
(주)대영케이블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610,913,007
(주)D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402,613,879
합계	2,686,292,164

[소극재산]

피고 A에 대한 채무	2,739,200,975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490,000,000
합계	3,229,200,975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① B의 피고 A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을다 제1호증, 을다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2014. 12. 31. B에게 1,042,177,65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A은 위 1,042,177,652원 상당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2014. 12. 2.부터 같은 달 11.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데 2014년 12월말에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것이라고 자인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의 피고 A에 대한 채무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739,200,975원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의 주식회사 대한엠앤씨에 대한 198,360,316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의 공동피고 주식회사 대한엠앤씨(2016. 5. 25. 소취하되었다)에 대한 위 198,360,316원의 물품대금 채무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4. 12. 18.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참조), 이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제3채무자와의 거래에서 지급받을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다만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을다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B의 피고 A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 총액이 2014. 9.말경부터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2014. 11.말경에는 그 채무 총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2014. 11.말경부터 B의 외상물품대금채권이 일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고, 이에 2014. 12.경 B의 피고 A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변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었다.

② 그런 상황에서 B가 피고 A에게 추가 물품공급을 요청하자, 피고 A은 2014. 12.경 B에게 '추가 물품공급을 위해서는 외상물품대금 채무를 어느 정도 정리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해야

물품공급을 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③ B의 대표이사인 C는 2014. 12. 17. 피고 A에게 'B가 조금 어렵지만 피고 A에서 도와주면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B의 채권현황과 변제계획안을 피고 A에 설명하며 계속적인 물품공급을 요청하였다.

④ 이에 같은 날 B와 피고 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피고 A은 2014. 12. 24.경 B가 우선 요청한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피고 A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B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A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와 피고 A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아울러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피고 A은 2014. 12. 31. D으로부터 위 양도받은 채권 중 4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A이 D에 납품한 물건에 대한 물품대금인 점, ② B는 그 동안 피고 A과 물품거래를 하면서 B의 다른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 요청을 받으면 이를 피고 A에 발주하고, 위 발주에 따라 피고 A은 D과 같은 B의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B는 D과 같은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피고 A에 대한 자신의 물품대금을 정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피고 A은 2014년 6월경에도 원고의 보증 하에 B와 계속적인 거래를 지속하여 온 경위, 피고 A이 양도받은 위 채권액, 채권 회수시기, 그 동안의 거래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이 D으로부터 회수한 채권액은 결국 B가 D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아 피고 A에 대한 B의 물품대금으로 정산하였을 돈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 A에 대한 가액배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우라옥

판사이원호

판사이인민

별지